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8
------	------

제출일자 : 2021. 8. 2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에 2021. 6. 1. 개정된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8개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별표)
- 나.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의 환급 규정에 “금천베이스볼파크” 를 추가함(안 제8조)
- 다.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에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를 추가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1조
- 2) 「지방자치법」 제136조
-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23. ~ 2021. 8. 12.): 별도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첨
- 4)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청소년 또는 어린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

②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제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잔디축구장” 을 “잔디축구장 및 금천베이스볼파크” 로 한다.

별표 □ 개인사용료의 비고 제4호제1항 중 “국가유공자” 를 삭제하고,
 □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사용시간
사용료	20,000	30,000	2시간
비 고	1. 사용료는 조명시설 사용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와 동일함 3. 금천구야구소프트볼연합회소속야구회, 금천구청직원야구동호회 및 청소년(초·중·고생)은 기본료의 40% 범위 내 할인(중복불가) 4. 금천구민(관내 사업장 포함)은 기본료의 20% 범위 내 할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청소년 또는 어린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 3. ~ 6. (생 략) <p><신 설></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청소년 또는 어린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 3. ~ 6. (현행과 같음) <p>②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환급) -----

 -----.

② (생략)

제8조(사용료의 환급)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잔디축구장 사용료 환급

가. ~ 다. (생략)

[별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개인사용료

비고 1. ~ 3. (생략)

4. 사용료 할인

① 국가유공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단,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사용료의 20% 범위 내 할인)와 등록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해당 사용료의 50% 범위내 할인

② ~ ⑤ (생략)

5. (생략)

전용사용료 (생략)

잔디축구장 사용료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잔디축구장 및 금천베이스볼파크

가.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개인사용료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

① 서울특별시-----

② ~ 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전용사용료 (현행과 같음)

잔디축구장 사용료(현행과 같음)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사용시간
사용료	20,000	30,000	2시간
비고	1. 사용료는 조명시설 사용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와 동일함 3. 금천구야구소프트볼연합회소속야구회, 금천구청직원야구동호회 및 청소년(초·중·고생)은 기본료의 40% 범위 내 할인(증복불가) 4. 금천구민(관내 사업장 포함)은 기본료의 20% 범위 내 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김형우
연 락 처	2627 - 1465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00.12.26 조례 제298호]

개정 [2001.07.16 조례 제330호]

(일부개정) 2004.12.28 조례 제416호

(일부개정) 2006.03.22 조례 제454호

(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477호

(일부개정) 2007.07.25 조례 제500호

(일부개정) 2010.11.23 조례 제630호

(일부개정) 2019.07.19 조례 제1037호

(일부개정) 2019.07.19 조례 제1037호

(일부개정) 2020.03.25 조례 제1088호

(일부개정) 2020.07.17 조례 제1100호

(일부개정) 2020.09.18 조례 제11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07.16, 2006.03.22>
2. "전용사용"이라 함은 문화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13세미만의 자 및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 및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문화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을 위한 구 단위 문화·체육행사 등과 중복될 경우 구 단위 행사 등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③구청장은 문화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 구민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5조(사용시간 등) ①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최근 3년간 체육시설사용료의 변동추세
2.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9, 2020.7.17>

1. 국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행사 및 경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청소년 또는 어린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자 <개정 2001.07.16, 2010.11.23>
3. 지역문화 또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4. 삭제 <2020.7.17>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신설 2020.9.18>
6.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4.12.28> <개정 2020.9.18>

②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19.7.19>

제8조(사용료의 환급)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22>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개정 2006.03.22>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개정 2006.03.22, 2019.7.19>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개정 2006.03.22, 2019.7.19>
4. 잔디축구장 사용료 환급 <신설 2007.07.25>
가. 사용개시일 10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전액환급

나. 사용개시일 5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70 환급<개정 2019.7.19>

다. 사용개시일 1일전 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00분의 50 환급<개정 2019.7.19>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에는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사용도중에 시설물을 파손·망실 등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설비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부대시설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한 문화생활 및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해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관리)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98호, 20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0호, 2001.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6호, 200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4호, 2006.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00호, 200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0호, 201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37호, 2019.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제1088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00호, 202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23호, 2020.9.1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06.12.29, 2010.11.23., 2019.7.19., 2020.3.25.>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장소	구분	대 상 (1시간 기준)			이용기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수영장	기본료	4,700	3,500	2,700	1일 1회
	월사용료	47,000	35,000	27,000	주 3회
체육관	기본료	3,600	2,400	2,000	1일 1회
	월사용료	36,000	24,000	20,000	주 3회
헬스장	월사용료	47,000	38,000		주 6회, 1일 전시간
비 고	1. 기본료와 월사용료(강습료)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 상한 금액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내에서 징수함 3.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0%를 할증 4. 사용료 할인 ① 국가유공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단,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사용료의 20% 범위 내 할인)와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해당 사용료의 50% 범위 내 할인 ② 단체 10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30% 범위 내 할인 ③ 복합체육프로그램(1일 2종목 이상, 이용일이 다른 각각 주 3회 이상의 종목)은 사용료 합계금액의 20% 범위 내 할인 ④ 3개월 이상 수강료 일시불 지불자는 10% 범위 내 할인(단 성인만 해당) ⑤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10% 범위 내 할인 5.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 전용사용료(평일주간기준)

(단위 : 원)

시 설 별	사 용 료	부속시설 사용료
체 육 관	(09:00~18:00) 120,000(4시간기준) ※ 체육 외 행사는 420,000	1. 음향,조명,영사기,비디오 : 3시간 기준 20,000원 2. 피아노 : 3시간 기준 15,000원 3. 냉·난방 : 1시간 기준 20,000원
수 영 장	(09:00~18:00) 780,000 (09:00~12:00) 260,000 (12:00~18:00) 660,000	
갤 러 리	(09:00~18:00) 70,000	
극 장	(09:00~18:00) 100,000(4시간기준)	
비 고	1. 토, 일, 공휴일은 평일의 30% 가산, 야간사용은 해당 주간 시간당 사용료의 30%를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봄. 2.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 야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봄. 3. 부속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를 가산하고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봄. ※ 단 냉난방 사용료는 4시간 이후 50%를 가산. 4. 동절기(11월~2월) 수영장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시(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징수함. 6. 야외무대 사용료는 극장 사용료에 준함.	

□ 잔디축구장 사용료(상한) <신설 '07.07.25>

(주간사용 기준, 단위 : 원)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사용시간
축 구 장	축구경기	60,000	78,000	2시간
	축구 외 행사	230,000	300,000	4시간
		460,000	600,000	전일(9시간)
조명시설		15,000		1시간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금천구축구대표팀, 여성축구단의 연습,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금천구축구연합회소속축구회, 금천구청직원축구동호회 및 청소년(초·중·고생)은 기본료의 40% 범위 내 할인 금천구민(관내 사업장 포함)에게는 기본료의 20%를 범위 내 할인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